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주체 범위 확대>
▣ 서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019호)

2023.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병수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3. 10. 5.
3. 회부연월일 : 2023. 10. 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1]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함.

이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와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연구역량의 핵심인 지역대학이 사업화 가능 우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를 통해 연합기술지주회사에 출연금, 출자금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2)]

< 지역 테크노파크 출자현황 >

(단위 : 백만원)

순	회사명	설립일	지역 TP출자금	비고
1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2009.4월	398	
2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2011.4월	4,208	
3	대경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4.11월	2,800	
4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5.9월	8,000	
5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2016.9월	3,500	
6	포항연합기술지주	2017.12월	399	
7	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2018.10월	2,625	

그러나 현행법은 산학협력단등(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것을 설립요건으로 규정하며[3)], 설립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취

2) 출연금은 지주회사 운영비로, 출자금은 자회사 설립(지분편입 포함)에 집행하고 있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4]

이에 따라, 지역 테크노파크로부터 지원받은 출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도 부산테크노파크의 현금출자 비율이 과다해져 2022년 출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한 바 있음.

< 부산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및 출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부산 TP	현금출자	1,250	1,250	1,250	1,250	1,750	1,250	*		8,000
	현금출연	1,250	1,050	1,050	1,050	1,600	690	1,150		7,840
	소계	2,500	2,300	2,300	2,300	3,350	1,940	1,150		15,840
대학	현금출자	1,140	580	580		270	106			2,676
	현물출자	136	739	296	1,799	1,265	1,314			5,549
	소계	1,276	1,319	876	1,799	1,535	1,420			8,225

* 2022년 출자받은 금액 전액 반납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주체에 공동설립 기관도 포함[5]이 되는바,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출연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 설립기관으로 추가하여 출자로 인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사업 등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그러한 노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지자체 등이 현금을 계속 출자하더라도, 기술지주회사 인가요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이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사업화를 위해 국가 또한 공동설립주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8

---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참고자료 :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22.12.)

○ 총괄

구분	지주회사 수	자본금(백만원)			자회사 수	비고
		현금	현물	계		
단독형	70	96,736	55,439	152,175	1,087	
공동형	10	51,939	27,736	79,675	391	
계	80	148,675	83,175	231,850	1,478	

※ 권역별 현황: 수도권(32, 40%), 충청권(13, 16.3%), 부울경(10, 12.5%), 호남권(10, 12.5%), 대경권(9, 11.3%), 강원(4, 5%), 제주(2, 2.5%)

○ 단독형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1	서울대	15,270	4,732	20,002	44	2008.10.
2	국민대	11,239	767	12,006	30	2018.06.
3	한양대	6,648	3,669	10,317	34	2008.07.
4	부산대	2,405	4,789	7,194	36	2010.02.
5	포항공과대	4,100	2,017	6,117	22	2012.04.
6	전남대	2,383	3,407	5,790	40	2011.04.
7	건국대	2,476	2,658	5,134	16	2013.12.
8	경북대	3,359	1,048	4,407	28	2013.06.
9	서강대	1,593	2,720	4,313	19	2009.01.
10	인천대	2,339	1,698	4,037	25	2009.11.
11	연세대바이오헬스	2,000	1,321	3,321	7	2021.07.
12	동국대	1,169	1,996	3,165	14	2010.02.
13	충남대	2,250	756	3,006	33	2017.03.
14	한림대	1,430	1,382	2,812	3	2020.07.
15	충북대	1,911	620	2,531	29	2016.01.
16	한국공학대	1,784	693	2,477	13	2013.12.
17	성균관대	1,000	1,458	2,458	13	2012.04.
18	한양대에리카	1,600	733	2,333	17	2013.06.
19	울산대	1,703	627	2,330	7	2012.07.
20	이화여대	1,500	779	2,279	10	2016.06.
21	한밭대	725	1,518	2,243	73	2013.12.
22	가톨릭대	1,300	831	2,131	16	2012.04.
23	세종대	1,450	643	2,093	5	2012.04.
24	제주대	1,100	740	1,840	15	2012.07.
25	숭실대	1,050	749	1,799	4	2017.09.
26	동아대	1,130	649	1,779	27	2012.04.
27	중앙대	1,195	513	1,708	6	2013.12.
28	한남대	720	859	1,579	31	2013.08.
29	조선대	1,049	485	1,534	14	2010.10.
30	숙명여대	770	696	1,466	6	2016.06.
31	부경대	570	865	1,435	11	2013.12.
32	서울과학기술대	1,300	130	1,430	10	2018.06.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33	강원대	1,186	130	1,316	23	2014.06.
34	인제대	955	352	1,307	31	2018.09.
35	한국해양대	714	507	1,221	32	2014.11.
36	전북대	900	280	1,180	14	2018.12.
37	아주대	1,010	109	1,119	5	2021.07.
38	영남대	900	202	1,102	4	2020.07.
39	순천향대	350	744	1,094	34	2014.06.
40	경상국립대	641	411	1,052	21	2016.06.
41	가톨릭관동대	633	419	1,052	13	2017.06.
42	경희대	531	475	1,006	15	2009.04.
43	서울시립대	600	300	900	4	2017.12.
44	대구대	620	266	886	21	2017.09.
45	호서대	330	500	830	10	2017.12.
46	한국교통대	570	160	730	12	2017.06.
47	동신대	200	474	674	3	2010.09.
48	제주한라대	500	141	641	1	2020.08.
49	명지대	390	218	608	11	2016.01.
50	한국기술교육대	304	298	602	13	2016.01.
51	대전대	344	253	597	15	2017.06.
52	가천대	332	246	578	6	2017.03.
53	단국대	368	188	556	14	2010.09.
54	창원대	400	105	505	5	2018.06.
55	세한대	470	31	501	2	2016.06.
56	공주대	350	150	500	8	2017.03.
57	금오공과대	349	150	499	11	2022.01.
58	전주대	300	100	400	22	2019.07.
59	순천대	200	200	400	1	2020.12.
60	인하대	247	120	367	3	2017.12.
61	한국예술종합대	100	267	367	3	2017.03.
62	대구한의대	314	46	360	25	2017.09.
63	선문대	100	246	346	6	2016.06.
64	동의대	100	234	334	15	2020.12.
65	군산대	200	114	314	17	2018.09.
66	한국영상대	205	95	300	0	2022.06.
67	동서대	203	97	300	0	2022.09.
68	광운대	194	85	279	3	2019.03.
69	삼육대	75	99	174	4	2008.10
70	한경대	33	80	113	2	2016.01.
계		96,736	55,439	152,175	1,087	

○ 공동형

기관명		자본금 (백만원)			자회사 수	설립인가월
		현금	현물	계		
1	고려대	12,210	8,290	20,500	57	2009.08.
2	연세대	10,060	6,454	16,514	38	2011.04.
3	부산지역대학연합	10,676	5,550	16,226	41	2015.09.
4	전북지역대학연합	4,904	2,037	6,941	24	2011.04.
5	대경지역대학연합	4,444	2,228	6,672	65	2014.11.
6	광주지역대학연합	4,700	1,394	6,094	36	2016.09.
7	전남지역대학연합	3,175	665	3,840	19	2018.10.
8	엔포유대학연합	920	395	1,315	53	2016.06.
9	강원지역대학연합	450	357	807	54	2009.04.
10	포항연합	400	367	767	4	2017.12.
계		51,939	27,736	79,675	391	